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등 관련 규정 및 방역조치 준수 철저(재사육 기준 등)

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432('20.12.18.)호
2. 최근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속 발생(검출), 과거와 달리 1월말 이후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절차 진행에 있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지자체는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육용오리 농장*에서 입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본부로부터 입식 전 점검**을 받은 이후 입식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식 전 환경검사(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432)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살처분한 농장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별도 입식 절차 진행 필요

** 지자체에서 입식 전 점검 완료 이후 각 시도에서 검역본부(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에 통보, 검역본부는 점검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흡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재점검하여 보완 여부까지 확인한 후 지자체에서 입식 허용.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검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주무관 **박제민** 서기관 **황성철**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1. 2. 4.
자방역과장 **이기중**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2. 4.) 접수
2691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